
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
(신성범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95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5. 13.

발 의 자 : 신성범 · 박덕흠 · 김위상  
엄태영 · 조은희 · 정연욱  
이인선 · 박성민 · 최형두  
박성훈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법무부장관이 계절적 특성이 있는 농·어업 등 분야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의 도입과 체류 등을 관리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급증으로 지자체의 관리의무는 늘었지만, 지자체 차원의 전담조직 설치 규정이 없어 다른 업무와 병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

이에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계절근로자의 도입·체류·관리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19조의6 신설).



##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9조의6(계절근로 전담조직의 설치·운영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계절근로자의 도입·체류·관리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조직(이하 “계절근로 전담조직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계절근로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계절근로자의 도입 신청, 배정 및 입국 지원에 관한 사항
2. 계절근로자의 체류 관리 및 출국 지원에 관한 사항
3. 계절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지도·점검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
4. 계절근로자와 관련된 민원 처리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
5. 제19조의5제9항에 따른 개입 행위의 예방 및 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계절근로자의 관리·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국가는 계절근로 전담조직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

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④ 계절근로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<u>제19조의6(계절근로 전담조직의 설치·운영) ① 시장·군수· 구청장은 계절근로자의 도입· 체류·관리 및 지원에 관한 업 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 하여 전담조직(이하 “계절근로 전담조직”이라 한다)을 설치· 운영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제1항에 따른 계절근로 전 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u>1. 계절근로자의 도입 신청, 배 정 및 입국 지원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<u>2. 계절근로자의 체류 관리 및 출국 지원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<u>3. 계절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지도·점검 및 권익 보 호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<u>4. 계절근로자와 관련된 민원 처리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사 항</u></li> <li><u>5. 제19조의5제9항에 따른 개입 행위의 예방 및 신고 접수에</u></li> </ol>

관한 사항

6. 그 밖에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계절근로자의 관리·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계절근로 전담조직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른 계절근로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